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2789
결재일자	2015.2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복지연계담당	복지정책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이은석	이용철	민지선	02/04 도일환		
협 조					

##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원계획

2015. 2.

**교육문화복지국**  
**복지정책과**

#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계획

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고 창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(사회서비스 제공계획)
-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
## I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2월 1일 ~ 2016년 1월 31일(1년)
- 사업내역

유 형	사업명	2015년 예산액 (단위:천원)	월이용액	비고
총 계		795,412		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	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(서울시통합)	200,000	월160천원	
	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	500,000	월170천원	
	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	60,000	월240천원	
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		35,412	월228천원(24시간) 월256천원(27시간)	

## □ 사업추진절차

구 분	주 체	내 용	비 고
신청 및 접수 (동 주민센터)	본인·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담당공무원	○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	
↓			
상담 및 소득조사 (동 주민센터)	동 주민센터 담당자	○ 신청가구의 여건,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 여부 등 확인	
↓			
이용자 선정 (구청)	구청 담당자	○ 행복e음을 통한 선정 - 예산 상황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○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선정결과 전송(매월 말일 18:00까지) ○ 대기자 관리 -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적합자	
↓			
통 지 (구청, 동주민센터)	구청 담당자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	○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	

## III 추진계획

### □ 이용자 신청 및 선정

#### - 신청권자

-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(후견인)

※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후견인)은 위임장 지참

-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(반드시 보호이용자의 보호 동의 필요)

#### -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15일

※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상자 전송시기 고려(매월 말일까지 전송)

※ 우리아이꿈그리기 꿈부르기 바우처는 제공기관과 예산사정상 3월부터 신청 접수 가능

#### 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

#### - 신청서류
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 【공통서식 제1호】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 【공통서식 제2호】
- 바우처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【공통서식 제3호】
-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【공통서식 제4호】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【사업별서식 제1호】
-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서류 (납부확인서, 영수증, 월급명세서 등)
- 기타 사업별 증빙서류(의사소견서, 심리결과 확인서, 추천서 등)

### - 선정기준

사업명	연령기준	소득기준	비고
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	만18세이하 (1997년생 이하)	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% 이하의 가정	국비50% 시비25% 구비25%
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	만8세~만13세이하 아동 (2007년생~2002년생)	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%이하의 가정	
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	만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	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%이하의 가정	국비50% 시비50%
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	만65세 미만 (1950년생 미만)	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 위계층 중 가사, 간병서비 스가 필요한자(장애인, 질 환자 등)	국비50% 시비25% 구비25%

※2015년 가구별·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(붙임2)참조

### □ 이용자 선정통지

- 이용자 선정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

※ 2015년부터 회당결제 시스템 변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, 바우처 카드 분실이외의 미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

- 대기자 관리

- 욕구, 소득, 연령 등 이용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“부적합”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행복e음을 통해 대기자로 선정관리
- 향후 추가 예산확보 시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담당자가 직권으로 상정하여 선정
- 대기자 관리는 당해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실시(2016년 사업 추진시에는 별도로 신청)

# IV 사업별 세부추진계획

## 1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
목 적 : 문제행동(ADHD)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

서비스대상

- 소득 및 연령 :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%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
- 욕구기준 :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

- ① 의사 진단서·소견서를 받은 아동
  -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
  - ③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서 동봉)
  - ④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(추천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·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
- ※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·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·심리·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·추천 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·추천 할 수 있음

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(행복e-음에서 확인)

제공기관 및 제공인력

- 제공기관 : '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- 제공인력 : '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'에 의한 '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'에 적합한 인력

서비스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

- 서비스 가격 : 월 16만원 (정부부담 70~90%/ 본인부담 10~30%)

구 분	1등급 (수급자 차상위·평균소득50%)	2등급 (평균소득 50%초과~100%)	3등급 (평균소득 100%초과~120%)
정부지원금	144,000원(90%)	128,000원(80%)	112,000원(70%)
본인부담금	16,000원(10%)	32,000원(20%)	48,000원(30%)

-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, 재판정 1회

서비스내용 및 제공장소

-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치료, 놀이치료, 학습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 등(선택제공)
- 제공장소 : 기관방문형

## 2

##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

□ 목 적 : 학교부적응 및 정서·행동문제,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 기회 제공

### □ 서비스대상

- 소득 및 연령 :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가정의 만8세 ~ 만13세 아동
- 우선순위
  - 1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
  - 2순위 : 차상위계층
  - 3순위 : 저소득층 우선

### □ 서비스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

- 서비스 가격 : 월 17만원 (정부부담 70~90%/ 본인부담 10~30%)

구 분	수급자, 차상위~평균소득50%	평균소득 50%초과~100%
정부지원금	153,000원(90%)	136,000원(80%)
본인부담금	17,000원(10%)	34,000원(20%)

-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

### □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

- 제공기관 : '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- 제공인력 : 음악, 미술관련 학과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치료관련 자격보유자

### □ 서비스내용 및 제공장소

- 서비스 내용 : 음악과 미술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사고력, 자기표현력, 학습능동성,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향상 등 아동 정서지원
- 제공장소 : 기관방문형

## 3

**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**

- 목 적 :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,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,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함

## □ 서비스대상

- 소득 및 연령 :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%이하 가정의 만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
- 우선순위
  - 1순위 :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
    - \* 증빙서류 : ① 의사진단서/소견서,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, ③ 청소년상담사 소견서, ④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, 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이용자(주민센터에서 조회) 등
  - 2순위 : 부모 스스로 정서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
    - \* 증빙서류 : 의사소견서/진단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정신보건센터장 소견서 등

## □ 서비스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

- 서비스 가격 : 월 24만원

구 분	기초생활보장 수급자	차상위~평균소득 50% 이하	평균소득 50%초과~100% 이하	평균소득 100%초과~120% 이하
정부지원금	216,000원	204,000원	180,000원	156,000원
본인부담금	24,000원	36,000원	60,000원	84,000원

- 서비스 제공기간 : 3개월(바우처포인트는 매월 생성/재판정 1회(최대6개월) 가능)

## □ 서비스 내용 및 제공장소

- 서비스 내용 :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전문상담 서비스(자녀특성에 대한 이해, 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,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, 가족기능 이해 및 강화) 제공
- 제공장소 : 기관방문형

## 4

#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
□ 목 적 :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·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

### □ 서비스대상

-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
- ① 1~3급 장애인
-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
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
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 
\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
-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사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
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
- 지원제외 대상

-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(만 65세 미만 차매특별등급 포함)  
☞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
- ②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
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
### □ 서비스이용기준

- 서비스 가격

제공시간	소득수준	서비스 가격	정부지원금	본인부담금
월24시간(A형)	기초생활수급자(가형)	월228,000원	월228,000원	면제
	차상위계층(나형)		월210,480원	월17,520원
월27시간(B형)	기초생활수급자(가형)	월256,500원	월247,050원	월9,450원
	차상위계층(나형)		월236,790원	월19,710원

-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

- 제공기관 : 성북지역자활센터

### □ 서비스 내용

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- 신변활동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-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-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


## V

## 행정 사항

- 사업별로 예산에 맞는 대상자 인원 수를 책정하여 사업추진
  - 사업별 모집대상자 인원수는 추후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공지예정
  - 대상자 인원수 초과시 대기자 관리를 통해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진행
- 성북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
  - 문제행동위험군 아동·청소년 사례관리시 관련 사업안내 및 추천서 발급 협조
-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경우 추가 대상자 모집 불가
  - 기존 이용자 재판정 결과 1년 연장 확정으로 인하여 올해 예산시정상 추가 대상자 모집 불가
  - 기존 이용자 자격 변동시 추가 대상자 선정 추진 예정
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홍보 철저

- 붙임 1.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신청서류 서식 1부.  
2.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부.  
3. 사업별 신청자 명단 1부. 끝.